17세기이후 기술관잡직제도를 바로잡을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와 그 평가

양 영 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것은 당대의 력사적조건에서 그 진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것입니다.》(《김정일전집》제5권 444폐지)

실학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서 당대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17세기초 리수광으로부터 자기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한 실학은 17세기 중엽 류형원에 의하여 확고히 형성되였고 18~19세기 중엽 정약용, 박지원, 리규경 등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당시 실학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일련의 개혁안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17세기이후 실학자들이 내놓은 기술관잡직을 바로잡을데 대한 견해의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17세기이후 벼슬제도가 문란해져 그것을 바로잡자는 실학자들의 견해들이 제기되였다. 기술관잡직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도 그러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중인출신들이 받고있던 기술관잡직은 량반신분충들이 받고있던 정직과 엄격히 구별됨으로써 잡직아닌《잡직》으로 불리워졌다. 특히 15세기이후 기술관들 에 대한 신분적차별이 심화되면서 그들에 대한 당하관 한품, 체아직제, 동서반의 실직불허, 직업의 세습화 등이 진행됨으로써 《잡직》으로 되여버렸다.

실학자들이 내놓은 기술관잡직을 바로잡을데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 저 기술관의 체아직제를 폐지할데 대한 문제였다.

당시 기술관잡직에는 역관, 의관을 비롯한 기술관청에 속하는 관리들이 포함되여있었다. 이들은 비록 정직계의 동반계를 받고있었지만 그들이 받고있던 관직은 체아직이였다.

체아직을 받는 기술관들은 대체로 고정된 록봉을 받지 못하고 1년에 네차례 시험을 친다음 그 성적에 따라 돌려가면서 록봉을 받게 되여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학자의 한사람이였던 류형원은 기술관청들의 급수를 떨구어 실제적인 대우를 해줄것을 제기하였다.

그는 《지금 역관은 명칭이 사역원 정(정3품의 장관직관리)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고정록봉이 없고 체아록을 받기때문에 의례히 참하관의 록을 받게 된다.》, 《…지금 사역원 정은 정3품이라고 하지만 중국에 가는 사신과 동행하는 일이 없지 않은데 3품관리로 하여금 서장관앞에서 굽신거리게 하니 이것은 관료규정을 문란하게 하는것이요, 굽신거리지 않게 하자니 서장관의 체면이 없게 된다.》(《반계수록》권15 관직제도(상))라고 그 페단을 지적하였다.

사역원은 봉건국가의 정3품 중앙관청으로서 여러 나라의 말을 번역하고있던 조선봉 건왕조소속 관청이였다.

사역원의 장관은 정3품 정이고 그밑에는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한학훈도, 몽학, 왜학, 너진학훈도, 참봉들이 있었는데 교수와 훈도 이외에는 모두 체아벼슬이였다.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역원의 장관의 품계는 정3품이지만 자기보다 품계가 낮은 서장관(정5품-인용자)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기때문에 류형원은 차라리 잡과출신들의 관청품계를 떨구고 그 장관 역시 품계를 낮게 제정하는것이 합당하다고 하 였으며 공연히 직위만 높여가지고 사실상 천인노릇을 하면서 실제상의 품계와 록봉을 가 지지 못하는것보다 그 직위를 좀 낮게 하는것이 편리하다고 하였다.(《반계수록》 권15 관 직제도(상) 전역사)

실학자들이 내놓은 기술관잡직을 바로잡을데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술관들의 한품서용제를 완화시킬데 대한 문제였다.

15세기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량반신분층과 달리 중 인출신들에게 품계를 당하관으로 제한시켰다. 이것이 기술관들에게 적용한 한품서용제였 다. 한품서용제는 신분에 따라 오를수 있는 품계를 한정해놓은 제도였다.

이러한 한품서용제는 16세기이후에 들어서면서 점차 문란되여 기술관출신들도 정3품 상(당상관)의 품계를 받았다.

1530년 7월 미천한 출신으로서 높은 의술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당상관까지 오른 김 순몽을 해임시키자는 사헌부의 제기(《중종실록》 권62 23년 7월 정유)는 16세기이후에 기술관 잡과출신들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당상관급에 임명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의학을 맡고있는 기술관출신들이 당상관직에 임명된 사실들이 많았다.

실례로 《의과방목》에 의하면 17세기 의과합격자들로서 당상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60명, 18세기에는 98명, 19세기에는 41명으로서 모두 199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비단 의과출신만이 아니라 다른 잡과출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1657년 7월 령의정 정태화가 국왕에게 제의한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는 대신들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국왕에게 근래에 와서 벼슬길이 혼란되고 명분이 문란해진 결과 《당상관이나 2품이상에 오른 잡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들은《변방장수나 고을원으로까지 임명되여 그길로 정식관리로 되고있다.》라고 한탄하였다.(《효종실록》 권17 7년 7월 기사일)

당시 이러한 문란상으로 하여 실학자들은 기술관출신들에게만 국한되였던 한품서용 제를 완화시킬데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실례로 정약용은 잡과출신들이 받는 품계를 일부 조절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기예나 잡기출신으로 벼슬한자로서 그 품계가 정2품 혹은 종1품까지 올라가서 의정 대신과 함께 숭록대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과의 접촉절차를 보면 한림 신진이 앉아서 읍(揖)만 할뿐이니 이름과 실직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잡과출신들이 받는 품계를 조절하자고 하였다.(《경세유표》 권2 하관 병조)

정약용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예나 잡기출신으로 벼슬한자라도 그 아들이나 손자중에서 《덕행》이 있고 문장을 잘하여 입사하여 정사(正士)가 되였다면 이것을 올려 대부를 삼아서 높은 품계로 올라가는데 구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둘째로, 기예나 잡기출신으로 벼슬한 본인만은 그 품계가 비록 높아질지라도 장군으로 되는것까지는 승인하지만 대부로 되는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셋째로, 정2품은 선덕장군이라고 하며 종2품은 분무장군이라고 하여 3위의 군직을 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넷째로, 특별히 공로가 있는자에게는 관성위 총어부사에서 대사(大使)까지도 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정약용의 견해를 분석해보면 하나는 잡직출신들에게는 특별히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무관직만을 주어야 한다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잡직을 본인에게만 국한시키고 자손들에게는 세습시키지 말자는것이였다. 즉 무관직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는 조선봉건왕조의 중문경무정책을 반영한 편협한 견해였다면 잡직을 본인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특권신분만이 높은 벼슬을 차지할수 있다는것을 부정한 견해였다고 할수 있다.

기술관잡직을 바로잡을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술관출 신에게 량반들만이 받게 되여있던 정직동반계를 주는것을 허락할데 대한 문제였다.

정약용은 한가지 기예로 벼슬한자는 식년마다 12명을 선발하여 정조(政曹)에 맡겨동반의 정직을 삼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 기관에서 이미 8품, 9품을 거쳤으므로 선발되기만 하면 인차 승급시켜 동반의 정직을 삼을것이며 그의 복무기한이 완료되는 때에는 찰방을 삼기도 하고 현령을 삼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경세유표》 권3 천관수제 3반관제)

정약용의 이 제안은 특권량반들만 차지하던 정직에 잡과출신들도 임명하자는 혁신적 인 제안으로서 잡과출신들을 대대로 세습시키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던 당시의 현 실을 부정한 진보적인 제안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실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그 당시 전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일부 기술관직 관리들이 고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마침내 《대전통편》(1785년)에 명문화되는데까 지 이르렀다.

물론 18세기이후에 일부 잡과출신들이 과거시험을 거쳐 량반신분으로 되여 정직계를 받는 현상도 있었으나 그것은 완전한것은 아니였다.

1762년(영조 38년) 진사시험에서 합격한 리형운이 역관의 아들인것으로 하여 삭제당한것(《영조실록》권99 38년 3월 임인), 청나라와 일본과의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역관들의 생활형편이 악화되여 그 자식들가운데서 다른 길로 나가는것을 막기 위해 사역원에 소속시킨것(《영조실록》권75 28년 정월 기축)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나 18세기 말엽에 이르러 기술관출신들은 얼마든지 높은 벼슬로 올라갈수 있었다. 1787년 6월 령의정 정존겸은 잡과출신들이 6품벼슬에 오른 후 돌림차례가 된 뒤에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45개월이 되여야만 조동될수 있다고 《대전통편》에 규정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전시기까지 출근일수로 계산하여 6품벼슬에 올라가고있다고 하면서 잡과에 대한 출근일수계산을 법전의 내용대로 할것을 국왕에게 제의하여 승인을 받았다.(《정조실록》권21 10년 6월 임진)

이것은 18세기 말엽에 와서 잡과출신들이 6품에 오른 후 국왕의 돌림차례가 있은 뒤부터 출근일수를 따져 정식 6품으로 올리는것이 법으로 규정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조치는 잡과출신들에 한해서 다른 벼슬로 승급되는것을 엄격히 제한하던 15 세기에 비하여 개혁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관출신들의 불 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조치였다고 말할수 있다.

실학자들이 제기한 기술관잡직계를 바로잡을데 대한 견해는 일정하게 진보적성격을 띠고있다.

실학자들이 내놓은 기술관잡직을 바로잡을데 대한 견해의 진보적인 측면은 기술관출

신들도 량반정직계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15세기에는 중인출신들에게는 기술관직이 세습되여있는것이 원칙이고 그들에게 량반 정직을 주지 않게 법적으로 규제되여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술관 들이 중앙의 정직계와 지방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제도와 관직제도, 품계제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서 봉건적통치체 제를 더욱 문란시켰다.

이로부터 정약용은 기술관들에게 동반벼슬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그는 문신의 초입사자리로 36개, 무신의 초입사자리로 36개, 남행의 초입사자리로 36개, 서류의 남행초입사자리로 12개, 무신의 남행초입사자리로 36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중인으로서 벼슬하는자는 이미 삼의사, 역관, 관상감, 률학, 산학, 사자관, 화원이 있어서 그들이 벼슬하는 길이 넓지 않은것이 아니다. 9품, 8품은 반드시 따로 둘것없이 그들이 승급하여 중사(6, 7품)가 되는 날 그중 공로와 능력이 있는자를 선발하되 12명씩 뽑아서 동반정직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의 선발수가 서류와 균등해질것이다.》라고하였다.

우의 자료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정약용은 기술관출신들에게 일정한 수의 량반직을 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신분적차별을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은 기술관출신들에 대한 신분적차별의 완화, 벼슬등급제도에서의 공정한 인재선 발과 등용, 기술학의 발전 등의 견지에서 볼 때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다.

당시 실학자들은 《실사구시》,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유교성리학에 기초하여 관리들을 선발하던 이전시기의 관료질서를 바로잡을데 대한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특히 량반 관료충만이 받게 되여있던 정직동반직에 기술관출신들도 임명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러한 견해는 벼슬의 독점을 실현하려던 소수특권량반신분충들의 관료질서를 반대한 진보적인 측면이 있으며 또한 당시 실지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술관출신들의지위를 개선하려고 한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견해는 그들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부터 신분평등, 벼슬의 완화 등 봉건국가의 모든 통치제도를 개편할수 없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그들의 견해는 한갖 론의에 그치고말았다.

실학자들의 견해는 또한 국왕을 비롯한 소수특권관료들이 벼슬독점을 영구화하려는 진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일부 벼슬제도를 개편하려는 실학자들의 소극적인 립장을 반 영하였다는데 그 제한성이 있었다.

이처럼 17세기에 제기된 실학자들의 견해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으나 당대의 력사적조건에서 볼 때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의의를 가진다.